

젠더 관련 용어를 이해하며 함께 안전한 모임 만들기

[안내] 본 문건을 읽기 전에

본 가이드는 공동체의 안전한 문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공신력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보충자료를 **법률가의 검토 아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 위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나 실제 판례 등 더 깊은 이해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함께 배포된 보충자료(성희롱·성폭력·성적언동 개념 이해하기 등)****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주요 참고 출처 및 근거

- **법령 및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형법」, 「성폭력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24.1)』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및 정책토론자료집
- **전문 기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2020)』 /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사례집 및 FAQ』
- **국제 기준:** UN Women (OSAGI): 『What is Sexual Harassment?』 / WHO(세계보건기구) 성폭력 정의 및 ILO(국제노동기구) 폭력·괴롭힘 협약

우리가 자주 듣지만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성희롱', '성폭력', '성적 언동'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모욕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개념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개념들을 혼동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개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예방할 수 있어요
-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면 갈등이 생겨요
-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성적 언동'이란 무엇일까요?

성적 언동의 기본 개념

'성적 언동(Sexual Behavior/Remarks)'은 쉽게 말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예시들:

- 🗣️ 언어적: "몸매가 좋네", "섹시하다", "잠자리를 갖자"
- 👁️ 시각적: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기, 특정 신체 부위를 뽀히 쳐다보기
- 🖐️ 신체적: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시도

성적 언동이 아닌 예시들:

- 🗣️ "오늘 파란 옷이 잘 어울리네요" (단순한 복장 칭찬)
- 🗣️ "머리 스타일 바꿨네요?" (일반적인 외모 변화 언급)
- 🤝 악수, 하이파이브 같은 일반적인 인사

성적 수치심과 성적 언동의 관계

성적 언동을 이해할 때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적 수치심**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란? 성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끄러움, 굴욕감, 모멸감을 말해요. 예를 들어:

-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을 들었을 때
- 자신의 신체가 성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이미지를 강제로 봤을 때

⚠️ 중요한 구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 수치심은 개인적 감정이고, 법적 판단은 다른 기준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성희롱: 성적 언동 + 업무/고용/교육 관계 + 성적 굴욕감/혐오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을 의사에 반해 전송
- 모욕죄: 성적 내용으로 공연히 모욕

즉,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법적 근거로 접근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핵심 포인트: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요! (단, '성적 언동'에 한함)**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농담, 친밀감 표시 등)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적 언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례하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함의**를 담고 있어야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발을 밟은 비유의 재해석:** 실수로 발을 밟았을 때 사과해야 하는 것처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아프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발을 밟는 행위(성적 언동)**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발을 밟히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를 '밟은 것'으로 간

주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법적 판단의 두 기둥: 1. 객관적 요건:** 그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내용인가? **2. 주관적 요건:** 실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는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성희롱은 특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언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관계'가 중요해요!

성희롱이 적용되는 곳:

-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사이
-  학교: 교사와 학생, 선후배 사이
-  공공기관: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중요한 사실: 친구 사이는 성희롱이 적용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친구나 일반적인 지인 관계에서는 법적인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교육'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  친구가 성적 농담을 해서 불쾌했다 → 성희롱 아님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음)
-  직장 상사가 성적 농담을 반복한다 → 성희롱 가능

성희롱의 두 가지 유형

1. 조건형(대가형) 성희롱 쉽게 말해 "이걸 들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형태예요.

- 예시: "나랑 저녁 먹으면 승진시켜줄게", "거절하면 낮은 학점 줄 거야"

2. 환경형 성희롱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불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예요.

- 예시: 매일 음담패설을 하는 동료, 사무실에 야한 사진을 붙여놓기, 지속적으로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기

성희롱의 법적 결과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예요. 대신:

-  직장: 징계(경고, 감봉, 해고 등)
-  민사: 손해배상
-  행정: 시정명령, 과태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사회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적 제언(고용 관계가 없는 사적 영역에 대한 수사권이나 형사 처벌권 부재)일 뿐 그 자체로 '법'은 아닙니다. 물론 특정 단체나 개별 공동체 내부에서 일반 사회의 법적 기준보다 더 나아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인 간의 부적절한 언행도 '성희롱'으로 규정하자고 윤리적 합의(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약속)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법률적 처벌 기준으로 착각하여 용어를 오남용할 경우 실제 사법 현장에서는 요건 미비로 기각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 역고소의 빌미가 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혼동하곤 하지만, 성희롱은 주로 고용·업무 관계 내에서의 행정적 징계 대상인 반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정신적 침해로서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는 엄격한 '형사범죄'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법적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반 사회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이 명확한 형법상 죄명(강제추행, 모욕죄 등)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의 법적 질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의 법적 정의와 현실

성폭력은 성희롱보다 훨씬 심각한 형사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 현재 우리나라 법률(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주요 성폭력 범죄들:

-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삽입 (이성 간에만 적용)
- 유사강간: 성기 외 신체부위나 도구 삽입 (동성 간 포함)
- 강제추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동의 없는 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내용 강제 전송
-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비동의 유포 등

⚠ 용어 사용 시 주의: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형사범죄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므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 정확하게 사용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법률의 한계와 쟁점

1.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하여,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위력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상사-부하, 교사-학생)
- 그루밍(grooming)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의 가해
-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협박" 요건 대신 ***"적극적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입법론입니다. 스웨덴(2018), 독일(2016) 등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입법 시 고려사항: 피해자 보호 강화와 동시에 무고죄 악용 방지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성폭력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상황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2. 동의(Consent) 개념의 법적 명확화

현행법상 ***"적극적 합의"***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명시성(Explicit): 명확한 동의 표시
- 의식성(Conscious): 충분한 의식 상태에서의 동의
- 정보성(Informed):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의
- 평등성(Equal): 권력관계나 위력에 의하지 않은 대등한 동의
- 지속성(Ongoing): 각 단계별, 지속적 동의 확인

📖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법적 한계

1. 여성학적 성폭력 개념의 확장

여성학계와 운동진영에서는 법적 정의를 넘어선 포괄적 성폭력 개념을 사용합니다:

- 언어적 성희롱을 "언어적 성폭력"으로 포함
- 성적 대상화와 구조적 성차별을 "일상적 성폭력"으로 확장
- "작은 성폭력", "미시적 성폭력" 등의 개념 도입

이러한 확장은 젠더 권력 구조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폭력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2. 법적 정의와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① 법적 혼란: 일반인들이 형사범죄와 사회윤리적 문제를 구분하지 못함 ② 기대와 현실의 괴리: "성폭력"으로 신고했으나 법적 요건 부족으로 기각 ③ 역고소 위험: 부정확한 법적 근거로 인한 명예훼손 등 2차 분쟁 ④ 개념의 혼재: 심각한 성범죄와 언어적 부적절함이 동일 용어로 혼용

3. 법학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

법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합니다:

- 층위별 구분: 형사법적 성폭력 vs 사회윤리적 젠더폭력
- 용어의 정확성: 법적 신고 시 정확한 구성요건 확인
- 피해자 교육: 상담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경로 안내

핵심 차이: 형사처벌

성폭력은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법원 재판을 거쳐 처벌받습니다:

- 징역형 (강간: 3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
- 벌금형
- 성범죄자 등록
- 취업제한 등

중요한 구분:

- 성희롱: 징계, 과태료 (행정적 처벌)
- 성폭력: 징역, 벌금 (형사처벌)
- 젠더폭력: 사회적·윤리적 비판, 교육·예방 차원

성희롱은 고용·업무 관계 내에서의 행정적 징계 대상이지만, 성폭력은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는 엄격한 ****형사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신체접촉: 종합 이해

강제추행죄 기본 이해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의 의미: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판단 기준의 변화

과거: "손은 성적 부위가 아니다" → 무죄 현재: 성인지 감수성 도입으로 피해자 감정 중심 판단 → 유죄 증가

구체적 판례들

무죄 사례들

- 일반적인 악수 행위
- 미혼자 간의 이성적 호감 표현

유죄 사례들

-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기 → "성관계 제의"로 인식
- 2-3분간 손을 쥐고 쓰다듬기

- 거부 의사 표현 후에도 지속
-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

🔥 충격 판례: '똥침'도 강제추행

- 2015년 법원: 아동 '똥침' 행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로 판단

*더욱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결과는 사건의 특수성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검토하여 발행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법적 정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구성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급증하는 사건 현황

- **2020년:** 2,071건
- **2021년:** 5,102건
- **2022년 상반기:** 5,027건 (전년 연간 수치 근접)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25** (벌금 800만원):

- 피고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반복 사용
- "펌프질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송
-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 스크린샷만으로 유죄 인정

🌐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란?

💡 '젠더 폭력' 개념이 필요한 이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젠더폭력의 장점:

- 법적 성폭력과 구분되는 포괄적 개념
- 구조적·문화적 문제까지 포함 가능
- 법적 혼란 없이 사회적 비판 가능
- 교육과 예방 차원에서 더 효과적

예시:

- 법적 접근: "이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젠더폭력 접근: "이는 성별 권력관계를 악용한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젠더폭력의 개념

젠더폭력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인 '성폭력'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젠더폭력이 포함하는 것들:

- 성희롱, 성폭력 (법적 개념)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 성매매 강요
-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 성차별적 언행과 문화
- 성적 대상화

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1. 구조적 문제 인식: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봄
2. 포괄적 접근: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 일상의 차별도 포함
3. 예방과 교육 효과: 젠더 감수성을 높여 예방에 효과적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상황 1: "좋아한다"는 고백

Q: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문제없는 경우:

- 동등한 관계에서의 진심 어린 고백
- 거절 의사를 받고 즉시 중단
- 위협이나 압박 없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고백

- 거절했는데도 계속 시도
- "안 받아주면 불이익 줄 거야" 같은 압박

실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126500 결정): "기혼 상사가 미혼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문자를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

상황 2: 외모에 대한 언급

Q: 외모 칭찬도 성희롱인가요?

A: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 일반적인 칭찬:

- "오늘 정장이 멋있네요"
-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려요"

❌ 성적 평가:

- "몸매가 정말 seksi해요"
- "치마 입으니까 각선미가 예술이네"
- "가슴이 크니까 더 예뻐 보여"

상황 3: 친구들끼리의 성적 농담

Q: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을 했는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A: 법적으로는 성희롱이 아니에요. 하지만!

- 친구 관계는 고용/교육 관계가 아니므로 법적 성희롱 ❌
- 하지만 상대가 불쾌해한다면 멈춰야 할 부적절한 행동 ⚠️
- 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상황 4: 카톡 단체대화방에서의 성적 대화

Q: 남자애들이 카톡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법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한 법적 구분:

1. 성희롱으로는 고소하기 어려워요: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교육 관계"에서만 성립
- 직장 동료끼리: 같은 회사 근로자 사이라면 성희롱 가능하지만, 단순히 성적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 그 대화가 특정 여직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필요
- 학교 동기: 법적 성희롱 적용 안됨 (교사-학생 관계가 아님)
- 일반 친구: 법적 성희롱 적용 안됨

 주의: 성희롱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에서 성희롱으로 신고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다른 형사범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메시지 전송 시
-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  모욕죄: 추상적 판단이나 혐오감정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상황 5: 교회에서의 특별한 주의사항

교회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영적 권위와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법적 관계 구분:

 성희롱법이 적용되는 관계 (고용관계 **O**):

- 담임목사 ↔ 부목사/전도사: 고용계약 관계
- 교회 ↔ 사무직원/교육목사/찬양목사: 임금을 받는 직원
- 교회학교 교장 ↔ 교사: 교육기관 내 위계관계
- 이런 경우 성적 언동이 있으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

 성희롱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 (고용관계 **X**):

- 목사 ↔ 교인: 종교적 지도관계이지만 고용관계 아님
- 교인 ↔ 교인: 신앙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 장로/권사 ↔ 교인: 직분은 있지만 고용관계 아님
- 이런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접근

 중요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목사가 교인에게 성적 언동을 했으니 성희롱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종교적 지도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 다른 형사범죄로 처벌 가능해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들:

언어적 젠더폭력:

- 목사가 상담 중 "남편과의 성생활은 어때요?" 같은 불필요한 성적 질문
-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육체적으로도..." 같은 종교 악용 발언
-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벗은 몸을 보여달라" 같은 기괴한 요구
- 예배 중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 같은 성차별적 설교
- 청년부에서 "○○자매 몸매 좋다" 같은 외모 폼평

신체적 성범죄:

- 목사가 안수기도를 빌미로 가슴이나 허벅지 등 성적 부위 만지기
- "치유"라며 옷을 벗게 하거나 성적 접촉 시도
- "악령 쫓기"를 빌미로 신체 접촉하며 추행
- 상담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강제로 포옹이나 키스
- 수련회에서 잠든 사이 몸 만지기

디지털 성범죄:

- 교회 단톡방에서 특정 자매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
- 목사가 교인에게 성적 내용 메시지 전송
- 교회 내 몰래카메라 설치
- 수련회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여 유포

💡 교회의 특수성:

- 종교적 권위 악용: "하나님의 뜻", "신앙적 성장"을 빌미로 성적 요구
- 공동체 압력: "교회를 위해 참으라",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 은폐 문화: "교회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자"
- 피해자 고립: "마귀에 씌였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 같은 2차 가해



법적 용어 사용 시 주의사항

사건이 진행 중일 때:

- ❌ "가해자/피해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
- ⦿ "신고인/피신고인", "고소인/피고인", "신청인/피신청인"

법적 판결이 확정된 후:

- ⦿ "가해자/피해자"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됨)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할까요? 설불리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명예훼손 등 2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동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요?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의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을 우선 고려하여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법학계와 여성학계에서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며 발전된 개념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핵심 원칙

1.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권 최우선 보장

- 중대한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보호 조치

-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진지한 경청

-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적 수용과는 구별
-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거부
-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3. 균형적 인권 보장

-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신고인/피신고인의 인권 보장 병행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가해자"가 아닌 "피신고인" 용어 사용
- 무죄추정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적절한 균형

자주 생기는 오해들

- ❌ "피해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다" → 경청과 무조건적 수용은 다름
- ❌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한다" → 법적 절차와 피해자 지원은 구별
- ❌ "피신고인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 → 양측의 인권을 모두 보장해야 함

피해자 중심주의의 법학적 의미

기존의 "합리적 일반인" 기준에서 "합리적 피해자"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남성 중심적, 가해자 중심적 해석("저항하지 않았으면 동의", "피해자가 조심했어야" 등)을 비판하며,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예시: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 기존 방식: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농담이잖아"
- 피해자 중심적 접근: "그 상황에서 부하직원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고용관계가 아닐 때 적용되는 형사법 설명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성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단체방도 해당)
- "모욕":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
- 예시: "○○는 걸레야", "창녀 같다" 등
- 처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
- 예시: "○○가 누구랑 잤다더라" (사실이든 거짓이든)
- 처벌: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구성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전송

- 예시: 성적 메시지, 음란물을 직접 전송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란?

법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 쉽게 말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예를 들어:

- 20대 여성 신입사원이라면 → 다른 20대 여성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느낄까?
- 40대 남성 중간관리자라면 → 다른 40대 남성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느낄까?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들

- 관계: 상사-부하? 동료? 친구?
- 장소: 사무실? 회식자리? 사적 모임?
- 반복성: 한 번? 여러 번?
- 거부 의사: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 맥락: 업무상 필요? 개인적 호감?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

즉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발언
- 거절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성적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직접 받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후 신고를 고려할 경우:

- 반복적인 성적 농담으로 업무환경이 불편한 경우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가 지속되는 경우
- 사적 만남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 단체방에서 자신에 대한 성적 대화 발견 (명예훼손, 모욕죄 검토)

! 신고 전 주의사항:

- 정확한 법적 근거 확인 필수!
- 성희롱은 직장·학교 관계에서만 적용
- 친구·동기 사이는 다른 죄명으로 접근
- 잘못된 죄명으로 고소 시 역고소 위험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들

증거 수집:

-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가장 중요!
- 📧 이메일 기록
- 📅 일시, 장소, 상황을 적은 메모
- 👤 목격자 진술
- 📺 CCTV 영상 (가능한 경우)
- 단체대화방 캡처: 전체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 디지털 증거 수집 팁:

- 스크린샷 찍을 때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 대화 상대방 이름이 명확하게 보이게
-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장 촬영
- 삭제되기 전에 빨리 저장하기

신고 전 준비사항: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
- 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 관련 증거자료 수집
- 목격자 연락처 확보

신고 방법:

- 직장 내 고충처리 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recept/sexualharassment.do>
- 직장갑질119: <https://www.workplace119.or.kr>

교육자료 및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
- 건국대 인권센터 FAQ: <https://kuhuman.konkuk.ac.kr/kuhuman/15281/subview.do>

국제 기준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daw/general-recommendations>

⚠ 잘못된 신고 시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

성희롱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의 위험성

법적 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상황들:

1. 친구·동기 사이의 문제를 성희롱으로 신고한 경우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교육 관계"에서만 성립
- 일반 친구나 학교 동기 간에는 법적 성희롱이 적용되지 않음
- 잘못 신고 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할 위험

2. 실제 사례와 판례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에 따르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이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적 근거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사례: A 교수가 간호사 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퇴출되었으나, 후에 무죄 판결을 받고 동료들을 위증·무고로 역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역고소의 현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상에 허위 내용 게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리 현황:

-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에 비해 더 엄중하게 처리되는 경향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

올바른 신고 방법

1. 사전 확인 필수사항

- 상대방과의 관계가 법적 성희롱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고용관계, 교육관계가 아닌 경우 다른 법적 근거 모색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경로 확인

2. 대안적 접근 방법

- 친구·동기 사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
- 직장 내부 해결: 사내 고충처리 기구 활용
- 사회적 접근: 젠더폭력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무고죄에 대한 최신 현황 (2024-2025년)

무고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최신 무고죄 통계 (2021-2024년):

- 무고죄 발생 건수: 연평균 4,000건대 지속 (2021년 4,133건, 2020년 4,685건)
- 기소율: 약 3% 내외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
- 2024년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 강화 요구 지속

성폭력 무고의 실제 현황 (실증 연구 결과):

- **2017-2018년**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연구: 성폭력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 피의자 비율 **0.78%**
- 성폭력 무고 기소율: 7.8% (매우 낮은 수준)
-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전체 무고 고소의 69.2%가 가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나 84.1%가 불기소
- 최종 유죄 확정률: 전체 무고 고소 사건 중 ****6.4%****만 유죄

중요한 팩트:

-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고소사건의 84.1%는 불기소 처분
- 성폭력 무고 사건이 다른 범죄보다 무죄 판결 받는 비율 약 6배 높음 (6.1% vs 0.7%)
-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허위 신고"라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근거 없음

결론: 성폭력 무고 유죄 확정률(6.4%)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사법상 '고의성' 입증의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벗어난 무리한 성희롱 지목은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천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을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처럼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보

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의사를 즉시 존중하기

상대방이 "그런 말씀 그만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변명하지 말고 바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거절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몸짓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황과 관계를 항상 고려하기

같은 말이라도 어디서,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상사와 부하 같은 권력관계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괜찮았던 농담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주세요.

개인차와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기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감이나 대화 주제가 다릅니다. 나에게는 별것 아닌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불쾌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사는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격려 표현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불편한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화하며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권력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기

선생님과 학생,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등 권력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농담이나 친근감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예방 안내서」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교육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업무상 필요성의 예외

때로는 업무상 성적인 내용을 다뤄야 할 때가 있어요:

- 🧑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 설명

-  경찰의 성범죄 수사
-  성교육 강사의 수업

이런 경우는 업무상 필요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않아요.

2차 피해 주의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
-  "네가 예민한 것 아니야?"
-  "힘들었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결론: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핵심 메시지

성희롱·성폭력·젠더폭력·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각각 다른 법적·사회적 층위를 가진 개념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존중과 동의에 기반한 관계 문화 구축에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성적 언동: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말과 행동의 총칭
- 성희롱: 업무·교육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행정적 징계)
- 성폭력: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 (사법적 처벌)
-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형사범죄 (10년 이하 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수단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전송 (2년 이하 징역)
- 젠더폭력: 성별 기반의 구조적 차별과 폭력 (사회문화적 변화)

법학적·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제언

1. 정확한 개념 사용의 중요성

각 개념의 법적 요건과 사회적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 방안 모색
-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 효과적인 사회적 비판과 교육 가능

2.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

- 법적 차원: 정확한 구성요건에 따른 사법적 해결
- 행정적 차원: 직장·학교 내 징계와 시정조치

- 사회문화적 차원: 젠더 감수성 교육과 문화 변화
- 개인적 차원: 일상에서의 존중과 배려 실천

3. 향후 과제

-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무고죄 악용 방지의 균형점 모색
- 젠더폭력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법적 정확성의 조화
- 피해자 중심주의와 적법절차의 조화로운 발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실천적 지침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윤리적 기준 적용
-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활용 방법 숙지
-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법적 경로 확인
- 젠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관계 개선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모두 갖춘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긴급상황 시: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성희롱)

전문 상담 및 지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국: <https://www.stop.or.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법적 정보

- 법령정보포털: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 고용노동부